



Web Contents



2024년 05월 03일 01시 45분

전체 (383)	상패류 (238)	관인류 (0)	기념류 (4)
견본류 (11)	기타 (130)		

9개 총 130건 제목 1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국가생물다양성 기관 연합 협정서

생물다양성지원에 대한 연구의 증진과 관련 정보구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기관이 '협력기관'이라 한다. 본 협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협력기관이 생물다양성정보 및 관련 과학기술의 협력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생물다양성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정보의 대중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협력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생물다양성자원 및 관련 과학기술의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화 공동 구축
 2. 생물다양성지원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대중 교육 및 전시 연계 실시
 3. 생물다양성자원 및 관련 과학기술을 프로그램과 제작 및 운영 공동 추진
 4.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
 5. 관련 인력 지원 교육 및 학생실습 등 시행
 6. 기타 협력기관의 발전과 상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본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협력위원회는 협력 기관이 각각 지정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4조(협력조항) 본 협정 제 2조에 규정된 협력범위를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협정은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5조(협력기간) 가. 본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협정 당사자는 협력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력기간은 자동으로 5년간 연장한다.

제6조(기타 사항) 협력기관은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및 활동영역을 사전에 상대방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아 활용한다.

협력기관은 본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협력 기관장의 날인 후 영장 1부씩 보관한다.

2008년 5월 19일

4개 기관 연합 업무 협약서

자연사 분야의 학술적 연구의 증진과 전시 교육 및 상호 협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본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력기관이 자연사 분야 연구 및 관련 연구 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연구, 전시, 자료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상호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협력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자연사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자연사 전시 자료 공유 및 공유
 3. 자연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
 4. 관련 시설 지원 교육 및 상호 연계 교육 지원
 5. 협력기관의 상호 홍보
 6. 기타 협력기관의 발전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력기간) 가.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협정 당사자는 협력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상호 협력기간은 자동으로 3년간 연장한다.

제4조(기타 사항) 협력기관은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및 활동영역을 사전에 상대방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아 활용한다.

국가생물다양성 기관 연합 협정서

생물다양성지원에 대한 연구의 증진과 관련 정보구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기관이 '협력기관'이라 한다. 본 협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협력기관이 생물다양성정보 및 관련 과학기술의 협력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생물다양성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정보의 대중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협력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생물다양성자원 및 관련 과학기술의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화 공동 구축
 2. 생물다양성지원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대중 교육 및 전시 연계 실시
 3. 생물다양성자원 및 관련 과학기술을 프로그램과 제작 및 운영 공동 추진
 4.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
 5. 관련 인력 지원 교육 및 학생실습 등 시행
 6. 기타 협력기관의 발전과 상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본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협력위원회는 협력 기관이 각각 지정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4조(협력조항) 본 협정 제 2조에 규정된 협력범위를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협정은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5조(협력기간) 가. 본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협정 당사자는 협력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력기간은 자동으로 5년간 연장한다.

제6조(기타 사항) 협력기관은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및 활동영역을 사전에 상대방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아 활용한다.

국가생물다양성 기관 연합 협정서

공공기록물
기타
술용처
전문
생물다양성자원에 대한 연구의 증진
과 관련 정보 구축을 ..

4개 기관 연합 업무 협약서

공공기록물
기타
술용처
전문
자연사 분야의 학술적 연구의 증진
과 전시 교육 및 상호..

국가생물다양성 기관 연합 협정서

공공기록물
기타
술용처
전문
생물다양성자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다양한 정보 전..

(재)전남테크노파크 목포자연사박물관 업무 협약서

(재)전남테크노파크(이하 "이관")와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 "B")이라 한다)간에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라도도의 경제 기반 구축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협조범위)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호 협의회에 제청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발전 활동
 2. 문화예술, 교육 및 정보 발전에 기여
 3. 서남권 도자문화 발전, 관광자원 육성 및 지역외 정보교류
 4.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인력적 공동활용과 상호교류
 5. 전라남도 도자문화 발전을 위한 기술수호조사, 분석 및 자료 "갑"과 "을"은 상호 요청에 따라 각각 수행하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며, 각각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장비보급) "갑"과 "을"은 정기간담회 등 상호 필요한 자료 및 교환하고, 상대방 직원 및 주민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간담회에,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상호 제공·회람할 수 있으며, 회람을 받은 상대방은 이에 대한 협조한다.

제3조(기타의 상호제정 등) "갑"과 "을"은 공동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제청을 받을 수 있으며, 내건 받은 기관은 사무실,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업무협정서

국립해양문화연구소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목포시 갯바위 문화기원으로서 상호 협력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협력기관이 상호협력활동을 통해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증진하고 협력기관의 다각적인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협력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전시의 관련 전시·연구자료 수집에 관한 협력
 2.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운영 지원
 3.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
 4. 홍보물의 공동 기획 및 공동 홍보
 5. 기타 상호 협력과 상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력기간) 본 협정 체결에 규정된 협력범위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협력기관의 해당 부서의 협의에 거쳐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제2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협정은 협력 기관장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제4조(협력기간) 가. 본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협정 당사자는 협력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력 기간은 5년간 자동 연장한다.

제5조(기타사항) 협력 기관은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및 활동영역을 사전에 상대방의 공식적인 동의를 받아 활용한다.

자연유산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약서(안)

목포시 목포자연사박물관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전남도 지식산업진흥원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대안연구소 유성주 대표로 2011.

목포자연사박물관과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양 기관은 문화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유산에 관한 문화콘텐츠(영상, 게임, 가상현실, 3차원 복원 등)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이 협약에서 정한대로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공동 사업의 성취에 헌신하여 위기에 처하도록 노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목포자연사박물관과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및 대안연구소의 관련 문화콘텐츠(영상, 게임, 가상현실, 3차원 복원 등)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공동 협력
 2.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시설, 장비, 프로그램 등의 상호간 지원 및 지원 협력
 3. 연구관련 전문 인력지원의 상호 교류
 4. 개발된 문화콘텐츠의 대국민 홍보 및 설치에 대한 공동 협력
 5. 상호 발전과 상호 증진에 관한 기타 협력 사항을

업무협약서

공공기록물
기타
술용처
전문
전남테크노파크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간의 업무 협조 약정을 ..

업무협정서

공공기록물
기타
술용처
전문
국립해양문화연구소와 목포자연사박물관은 목포시 갯바위권..

자연유산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공기록물
기타
술용처
전문
자연유산에 관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

업무협력 협약서

목포시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연구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간의 인제양성과 과학문화 대중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제반 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인력, 정보의 교류, 시설의 공동 활용 등의 상호협력에 의해 전시·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 양성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연구소 간의 상호 업무협력 협약서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연구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간의 인제양성과 과학문화 대중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제반 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인력·정보의 교류 등 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취약지역청년문화체험」 공동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서

목포자연사박물관·해남공룡박물관·무안군오슬물미술관·남도전통미술관·산골박물관·국립해양문화연구소는 인성과 성실로 다수와 같이 업무 협력을 체결하여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취약지역청년문화체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정책에 따라 상호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업무와 관련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가. 자연사·어린이과학·도에 관한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자문·운영
 나. 전시 자료 공동 조사·수집 및 연구
 다. 관내 어린이·청소년 방문 교육
 라. 인적·물적 인프라의 공동 활용
 마.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의 홍보 협력
 바. 기타 양 기관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

제3조(협력업무 추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무 추진 시에 양 기관은 보유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관련 규정제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협력내용을 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실 공동 활용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힘쓰며 전시·연구 및 과학·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과학·자연사 분야의 전시 및 행사의 공동 개최·협력
 2. 과학·자연사 분야의 인적·물적 인프라의 공동 활용
 3.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 개발·자문·운영
 4. 전시·자료 공동 조사·수집 및 연구
 5. 전시·연구·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의 홍보 협력
 6. 기타 본 협약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 3조(협력조건)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양 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상호협력 증진 및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지정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 구상함에 있다.

제2조 (상호선의의) 본 협약은 목포자연사박물관·해남공룡박물관·무안군 오송우미술관·남도전통미술관·소금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상호 간 관련 업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토록 한다.

제3조 (협력범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1. 지역생태생물관련협력사업 <취약지역청소년문화체험>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생태생물관련협력사업 <취약지역청소년문화체험>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3. 상호 회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호 협력이 가능한 관심 사항

업무협력 협약서
 공공기록물
 기탁처
 숙유서
 청보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국립과천과학관은 상호 제반 업무의 협..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국립광주과...
 공공기록물
 기탁처
 숙유서
 청보

목포자연사박물관과 국립광주과학관은 상호제반업무의 유기적..

취약지역청소년문화체험 공동 추...
 공공기록물
 기탁처
 숙유서
 청보

취약지역청소년문화체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상호 협력..

MokPo - Si
Web Contents

